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세징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인용 중인 법률 조문을 변경하여 위임 근거 법률 조문을 현행화(안제91조)

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(2023.12.29.)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
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
단순 이동

나.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안(‘24년 개정 추진 중)에서 법 제92조제2항이
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
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3제1항 전단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92조제3항”을 “법 제9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91조의8 중 “법 제103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1조의9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10 중 “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9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03조의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1조의12 중 “법 제103조의3제3항”을 “법 제103조의4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1조의2(공매대행 의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</u> 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.	제91조의2(공매대행 의뢰 등) ①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1조의3(압류재산의 인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</u> 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.	제91조의3(압류재산의 인도) ①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1조의4(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) ① 지	제91조의4(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) ① --

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1조의5(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)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91조의6(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)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

-----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1조의5(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) -----
 ---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1조의6(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) ① -----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-----

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
입금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매수
대금

② (생략)

제91조의8(공매대행 수수료) 법
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
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
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
로 정한다.

제91조의9(공매대행의 세부사항)
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
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
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
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
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
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1조의10(수의계약 대행) 지방
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
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(수
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
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)을
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
는 경우 대행 의뢰, 압류재산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92조제4항-----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1조의8(공매대행 수수료) 법
제103조의3제3항-----

-----.

제91조의9(공매대행의 세부사항)
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----

-----.

제91조의10(수의계약 대행) ----
----- 법 제103조의3
제1항제2호-----

인도, 매수대금 등의 인계, 해제
요구,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
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
규정(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
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
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
한다)을 준용한다.

제91조의11(전문매각기관의 매각
대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
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
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
이라 한다)을 선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
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
등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
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
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
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
공고한 기관

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
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
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
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

-----.

제91조의11(전문매각기관의 매각
대행) ① -----
----- 법
제103조의4제1항-----

-----.

1. ----- 법 제10
3조의4제1항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103조의4제1항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④ (생략)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법 제103조의3제1항</u>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. ⑥·⑦ (생략) 제91조의12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) <u>법 제103조의3제3항</u>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법 제103조의4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⑥·⑦ (현행과 같음) 제91조의12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) <u>법 제103조의4제3항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13